



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 6호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하고자 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
(대통령령 제29431호, 2018. 12. 24.공포, 2019. 3. 25.시행)

2. 주요내용

- 가. ‘금품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안 제4조부터 제4조의5, 제15조)
 -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다.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안 제8조의2)

- 지방의회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근대적 관행 청산

마.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안 제10조의3)

- 지방의회의원이 직무 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

바.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11조)

사. 사례금 관련 규정(안 제13조, 제13조의2)

아.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신고(안 제15조)

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차.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참조 :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화 : 054-537-7841, FAX :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sangjucounci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건 내 용	비 고